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두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법령서식[별지 제 6호서식]장기요양인정서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법령서식[별지 제7호서식]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법령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법령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목욕)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 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기타,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1) 계약기간

- ①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단 이용자와 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③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기관)과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②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 경감한다.
-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별표1,2,3,4,5,6>와 같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②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③ 대상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④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별첨 -

<별표1>

■ 재가급여 수가

가. 방문요양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40분 ~ 480분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별도

나. 방문목욕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1회당)	목욕차량 미이용시 (1회당)
	82,160	74,070	46,250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라. 본인부담금

구 분	부담금액 (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40% 경감 대상자	9 %
	60%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단, “다”항에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표2>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별표3>

분류번호	거 리	금액(원)
거-1	5km 이상 10km 미만	해당없음
거-2	10km 이상 15km 미만	
거-3	15km 이상 20km 미만	
거-4	20km 이상 25km 미만	
거-5	25km 이상 30km 미만	
거-6	30km 이상 35km 미만	
거-7	35km 이상	

<별표4>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별표5>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별표6>

구 분	부담금액 (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40% 경감 대상자	9 %
	60%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